

민원사무 처리 및 정보공개 규정 일부개정(안)

1. 개정이유

정보공개 법정처리기한을 초과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사항을 신설하여 처벌 근거를 제도화하고,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처리기한 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결정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승인 절차를 규정화하여 법정처리기한을 준수하고 결정기한 연장의 남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

또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직을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장으로 승격시켜 심의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법정처리기한 위반한 경우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유서를 징구하고 동일한 직원이 1년 내 다시 위반하는 경우 위반자와 정보공개 총괄담당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요구
-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처리기한 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결정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연장승인을 득함으로써 적법하게 결정기한을 연장하고 청구인이 납득할 수 있는 연장사유를 제시

-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을 총무부장에서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장인 총무고객처장으로 승격하고 공사위원은 위원장, 기획총괄부장 및 법무지원부장에서 위원장, 총무부장 및 법무지원부장으로 변경

민원사무 처리 및 정보공개 규정 일부개정(안)

민원사무처리 및 정보공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제33조 제2항의 공개여부 결정을 법정처리기한을 경과하여 결정한 경우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장은 위반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고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연사유 등을 기재한 사유서를 징구해야 한다.
- ② 동일한 처리담당자가 1년 이내에 법정처리기한을 위반하는 경우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장은 위반 직원 및 정보공개 총괄담당 직원에 대한 징계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.
- ③ 제33조 제6항의 이의신청의 인용여부 결정을 법정처리기한을 경과하여 결정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공개 결정여부 또는 이의신청의 인용여부를 법정처리기한 내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정보공개 주관부서에 결정기한 연장승인을 요청해야 한다.
- ②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장은 결정기한 연장의 사유가 영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연장사유를 제시하였는지 등을 검토 후 승인하고 미흡한 경우 승인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.

제3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장이 되며, 공사위원은 위원장, 총무부장, 법무지원부장 3명으로 하고, 민간위원은 사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2명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	사 유
제33조의2 (법정처리기한 위반 시 조치) (신설)	제33조의2 (법정처리기한 위반 시 조치) ① 제33조 제2항의 공개여부 결정을 법정처리기한을 경과하여 결정한 경우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장은 위반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고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연사유 등을 기재한 사유서를 징구해야 한다. ② 동일한 처리담당자가 1년 이내에 법정처리기한을 위반하는 경우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장은 위반 직원 및 정보공개 총괄담당 직원에 대한 징계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. ③ 제33조 제6항의 이의신청의 인용여부 결정을 법정처리기한을 경과하여 결정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	법정처리기한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를 제도화하여 법정처리기한 준수 의무 강화
제33조의3(결정기한의 연장) (신설)	제33조의3(결정기한의 연장) ①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	적법한 결정기한 연장과 구체적인 연장사유를 제시하여 청구인의 이해를 돕고 결정기한 연장의 남

현행	개정	사유
	로 정보공개의 결정여부 또는 이의신청의 인용여부를 법정처리기한 내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정보공개 주관부서에 결정기한 연장승인을 요청해야 한다. ②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장은 결정기한의 사유가 영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연장사유를 제시하였는지 등을 검토 후 승인하고 미흡한 경우 승인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.	용을 최소화
제34조(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) ① 공사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를 둔다. ②(생략)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정보공개 주관부서 담당팀장이 되며, 공사위원은 위원장, 기획담당팀장, 법무담당팀장 등 3명으로 하고, 민간위원은 사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2명으로 한다. ④(생략) ⑤(생략) ⑥(생략)	제34조(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) ① 공사는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를 둔다. ②(현행과 같음)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장이 되며, 공사위원은 위원장, 총무부장, 법무지원부장 3명으로 하고, 민간위원은 사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2명으로 한다. ④(현행과 같음) ⑤(현행과 같음) ⑥(현행과 같음)	제33조의3의 신설로 약칭 처리 심의회 위원장을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장으로 승격하여 심의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책임성을 강화